#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구매부분-

광양주식회사

# 개 정 이 력

| Date<br>(개정번호) | 개정 전 | 개정 후 |
|---|---|---|
| '24.04.12.<br>(REV. 01) | 3. 하도급법<br>2. 하도급법의 주요내용<br>2.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br>차. 공급원가 변동에 ~ (중략)<br>1. 공급원가 변동에 ~ (중략)<br>- 수급사업자는 제조 ~ (중략)<br>-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 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 (중략) | 3. 하도급법<br>2. 하도급법의 주요내용<br>2.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br>차. 공급원가 변동에 ~ (현행유지)<br>1. 공급원가 변동에 ~ (현행유지)<br>- 수급사업자는 제조 ~ (현행유지)<br>-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 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 (현행유지) |
| | 3. 하도급법<br>2. 하도급법의 주요내용<br>2.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br>차. 보복조치의 금지<br>2. 탈법행위의 금지<br>- 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 (중략)<br>- (신설) | 3. 하도급법<br>2. 하도급법의 주요내용<br>2.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br>차. 보복조치의 금지<br>2. 탈법행위의 금지<br>- 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 (현행유지)<br>-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중략) |
| | - (신설) | 4. 자율점검체크리스트<br>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 (중략) |
| '24.08.19.<br>(REV. 02) | - (신설) | 2. 공정거래법<br>3. 부당한 공동행위<br>- [심결례] 14.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제재 |
| | - (신설) | 4. 자율점검체크리스트<br>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 (중략) |
| | | |

# 목 차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6
1.1 CP 운영의 필요성 ····· 6
1.2 CP 핵심 8 대요소 ····· 6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 7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 7
2.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 7

## 2. 공정거래법

**1. 부당한 지원행위** ····· 9
1.1 부당한 지원행위 ····· 9

**2.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 16
2.1 부당한 거래 거절 ····· 16
2.2 차별적 취급 ····· 18
2.3 거래상 지위남용 ····· 22
2.4 구속조건부 거래 ····· 30

**3. 부당한 공동행위** ····· 31
3.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 40 조 제 1 항) ····· 31
3.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 40 조 제 5 항) ····· 32
3.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법 제 40 조 제 2 항) ····· 35

## 3. 하도급법

**1. 하도급 관련 규제** ····· 43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43
1.2 하도급법의 체계 ····· 43
1.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45

**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48
2.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48
2.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67
2.3 발주자의 의무사항 ····· 82

3. 납품대금연동제 (상생협력법) ····· 93

## 4. 구매부문 행동 가이드라인 및 종합 체크리스트

1. 구매부분 행동 가이드라인 ····· 106
2. 목적 ····· 106
3. 방법 ····· 106
4. 점검요령 ····· 106
5. 기타 ····· 106
6. 공정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 ····· 107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의 이해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광양(주)는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CP를 운영하고 있다.

## 1.1 CP 운영의 필요성

가.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을 송선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식된다.

나.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

다.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CP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CP 도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증가 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도 CP를 적극 도입하였다.

라.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자간의 부당공동행위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마.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Incentive 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1.2 CP 핵심 8대 요소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공정거래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이 중 당사 사업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작성 및 배포한다.

### 2.2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운영규정을 정하고 규정에서 지침에 위임한 사항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 등 세부운영 지침을 정하여 배포하고 있다.

# 2. 공정거래법

# 1. 부당한 지원행위

## 1.1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자 간의 지원행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가.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9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9)

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 (가지급금, 대여금등), 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 상품·용역, 인력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지원행위 판단기준

-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여부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

다. 지원행위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심결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열사 코스비전의 생산능력확대 및 저리차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인정

아모레퍼시픽그룹 행위는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7 호 가목의 규정에 위반, 코스비전의 행위는 법 제 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

[심결요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기가 보유한 예금을 무상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함으로써 코스비전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 24 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 24 조의 2
[제재내역]
아모레퍼시픽 그룹 48, 코스비전 480 (단위 : 백만원) 2020. 05. 25
[지원 행위 유형별 정상 가격 산출 방법]
① 자금 지원 행위에서의 정상 가격 (개별 정상 금리) 산출 방법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자금 (가지급금·대여금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용

② 자산·상품·용역 지원 행위의 정상 가격 산출 방법
- 해당 자산 (유가증권·부동산·무채 재산권등)·상품·용역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만일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①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②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③ 예외사유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으로 거래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경우

라. 지원행위의 예시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

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리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함

-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심결례]
남양유업은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등에게 시중금리와의 차액 약 690,184천원에 해당하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양유업은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대여금을 제공하며 물적담보를 제공받은사실이 있는데, 이 중 19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이 제공 한 담보는 이미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피심인의 대여는 후순위 담보대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후순위 담보대출의 경우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행사 후에야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추가 자금대여 자체가 곤란하거나, 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피심인은 위와 같은 시중금리와의 차액 이상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심결요지]
남양유업은 거래 상대방인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게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분유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내역]
남양유업 144 (단위 : 백만원) 2021. 11. 15

2.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제 3 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 3 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증자 전 제 1 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 1 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 1 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고가 임차]

4.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마. 지원행위의 예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지원주체의 계열사간 내부 시장을 활용한 지원 행위를 통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⑤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심결례]

올품은 이 사건 거래방식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주체로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동물약품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여 양돈 5사에게 동물약품을 공급함.

올품에게 현저히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임

[심결요지]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대성축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은 올품에 대하여 정산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양돈용 동물약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내역]

팜스코 532, 팜스코바이오인티 748, 대성축산 158, 포크랜드 49, 선진한마을 351, 선진 119, 제일사료 264, 하림지주 1,623, 올품 1,130 (단위 : 백만원) 2022. 01. 27

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 (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③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 2 조 제 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건,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부당지원행위 최신 심결례

1.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11. 08]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에 한국타이어그룹에 계열 편입하였다. 그리고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켜 인수 이전 보다 크게 영업실적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MKT의 영업실적은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의 불만이 증대되었고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신단가 정책[1]을 추진하였다.

[1] 신단가 정책 :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

[상세내용]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통해 외형상 매출이익를 2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하여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를을 실현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고,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7 조 (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 2 항 (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제 2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 3 항 (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을 부과함

2. (주)이랜드리테일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4. 10]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금 사정 또한 계속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랜드월드는 투자자와 주주 간 약정을 체결하면서 3,000억원 규모의 이랜드리테일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상세내용]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하였다.

첫째,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 주었다. (부동산 계약금 명목의 변칙 자금지원행위)

둘째,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SPAO 브렌드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하였으나, 자산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자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자산양수도 대금 지연회수를 통한 자금지원행위)
셋째 ,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 ~ 2016년 3월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인력지원행위)
이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하였다.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7 호 (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 2 항 (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2 제 1 항 (이익제공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 3 항 (이익제공 객체에 대한 규정)
에 위반된 사항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억 7천 9백만원 부과

3. 기업집단 "경동"소속 (주)경동원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5. 18]
(주)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주)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시장 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 할 수 있었다.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7 조 (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 2 항 (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억 8천만원 부과

4. 기업집단 "부영"소속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5. 11]
(주)대화기건은 (주)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 (액면가 5천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주)부영엔터테인먼트는 (주)대화기건으로 흡수 합병이 되어 영화 제작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7 호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 억 6천만원 부과

# 2.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 2.1 부당한 거래 거절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에 위반됨

가. 공동의 거래거절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1. 가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의 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 40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사업자들의 공동의 거래거절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와 "부당하게" 의 구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1. 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1. 그 밖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Q & A**

Q. 같은 지역에 이미 자사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판매점이 개설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의 판매점 계약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A. 거래개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거절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본 건의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Q.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A.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 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함

Q. 납품업체의 납품실적 부진 또는 규정위반 등이 발생하여 납품업체와 의 계약기간 중 납품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A.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사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납품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Q. 납품업체들이 공동으로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 또는 제한해 줄 것을 우리 회사에 요구하고 이에 따라 우리 회사가 특정점에 대한 구 매를 중단할 경우 위법인지?

A. 납품업체들의 행위는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로서 위법이며, 우리 회사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위법임

Q.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최고 없는 계약해지를 규정할 경우 계약의 효력 여부는?

A. 법적인 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나, 포괄적 계약해지 사유와 최고 없는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우리 회사의 경우 계약내용에 상관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2.2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가. 가격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2. 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하는 행위

1. 가격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거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등

■ 경쟁제한성을 가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거래조건 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 령 제 52 조 [별표 2] 2. 나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 조건, 하자 책임기간등) 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1. 거래조건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등 거래 내용면에서의 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조건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등

[심결례]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OOO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와 관련한 공사 총 3,578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였다.
세진중공업이 OOO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578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 3 조 제 1 항에 위반된다.
[심결요지]
세진중공업은 OOO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 3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내역]
과징금 세진중공업 879 (단위 : 백만원) 2022. 01. 19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2] 2. 다)

■ 대상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등 거래조건·거래내용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

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라. 집단적 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2. 라)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1. 집단적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등

■ 다음은 합리적 사유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되지 않음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Q & A**

Q.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게 판매 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는?

A.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음

Q. 특정 판매점에게만 가격할인, 보조금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A.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게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여 다른 판매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큼

Q. 협력업체를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대금결제를 차별화 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

A.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 동일상품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 되는가?

A.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격의 기준을 정해 놓고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예를들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서 문제 삼기는 어려움

Q.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

A. 판매물량, 거래기간 및 금액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음

Q. 우리 회사의 구매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 판매업체의 영업정책상 우리 회사의 우수한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다른 회사에 비해 대금결제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만일 계열회사가 그런 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한다면?

A.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음. 거래상 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당해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

### 2.3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요건

① 계속적인 거래관계 존재

-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등 투자여부 검토

②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함

-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 비중 검토

※ 상기 요건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Q & A**

Q. 판매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관한 정보, 매출 상세정보, 생산·판매·재고 현황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판매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확보하고 동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 매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는등 부당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만 가지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단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Q. 판매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 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가?

A.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계획량은 판매점이 전 분기 실적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판매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 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Q.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A.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거래상대방의 주문이 없는데도 회사의 재고량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③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④ 거래 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 (예시)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 업자와 시설임 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심결례]

롯데쇼핑은 자신과 특정매입거래관계에 있던 OOO등 총 73 개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한 지급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유보하기로 약정한 "영업부보류" 금액 총 65,834,801원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다.

[심결요지]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들의 매장 철수 이후 예상되는 상품의 교환·반품 등을 대비하여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금액 지급을 유보한 "영업부보류" 금액등을 해당 납품업자와의 거래 계약상 지급 약정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지급하거나, 관련 납품업자에 대한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가 피심인이 예측할 수 없는 납품업자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와 같은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상태의 지속이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사실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해당 "영업부보류"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재내역]

시정명령 2014. 04. 11

[심결례]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 3. 30.경 계열회사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에 이비씨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티브로드 기남방송, 티브로드 낙동방송, 티브로드 동남방송, 티브로드 북부산방송, 티브로드 새롬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등 9개 SO에게 "고객센터 에이에스(A/S, 이하 A/S라 한다)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 제목의 업무연락문을 통보하여 2009년 4월부터 9개 SO의 고객센터
[심결요지]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센터의 약정된 서비스 위탁수수료를 약정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재내역]
과징금 티브로드홀딩스 336, 티브로드 한빛방송 176, 티브로드 서해방송 4
(단위 : 백만원) 2015. 02. 02

나. 구입강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6. 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1. 구입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다. 이익제공 강요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6 .나)

1. 이익제공 강요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등 (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판매목표 강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 령 제 52 조 [별표 2] 6. 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1.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 중단등을 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등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등 불이익이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심결례]
전 임직원에 대한 신문판매 강요행위 (정기적인 신문확장 목표설정 및 할당, 신문확장 캠페인 실시)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광고 판매 강제행위 (지대 설정 관리를 통한 사원 판매 행위, 주재기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등 불이익 제공)
[심결요지]
경인일보은 자기의 임직원에 대해 신문 구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해당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신의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매월 구입할 신문부수와 이에 대한 지대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등 자신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재내역]
시정명령 2021. 02. 17

마. 불이익 제공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2] 6. 라)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불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거래 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등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바. 경영간섭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조 [별표2] 6. 마)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1. 경영간섭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 출납등 사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등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최신 심결례

1.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7. 06]
프뢰벨하우스(주)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프뢰벨하우스(주)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 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프뢰벨하우스(주)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 제공)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부과

2. 지멘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지멘스(주)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제재내용]
구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이익제공강요)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8,000만원 부과

3. (주)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보도일시 : 2023. 03. 07]
(주)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하여,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당 위탁수수료 100,0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주)와이케이건기와 거래를 하는 대리점은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며,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이외의 대체의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와이케이건기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주)와이케이건기가 계약서에 규정이 없음에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거래상지위남용)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 부과
[1]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4. 제일사료(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보도일시 : 2023. 04. 06]
제일사료(주)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하림"소속으로서 배합사료등을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이런 제일사료活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써 본사인 제일사료(주)는 대리점의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위반내용]

① 대리점의 책임이 아닌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 (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 (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 점에 전가하였다. → 부당하게 불이익 제공

② 대리점 계약 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제일사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하여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상 다수의 내용을 변경 하였음에도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제재내용]

구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와 "대리점법" 제 9 조 제 1 항①, "대리점법" 제 5 조 제 1 항 ②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아래와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법 위반 행위 | 조치내역 |
|---|---|
| ① 대리점의 책임이 아닌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967백만원) |
| ② 대리점 계약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 | 과태료 (1,250천원) |

5.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4. 06]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 (구글플레이) 1면 노출 및 해외진출 지원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제재내용]

구 "공정거래법"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5 호, 동법 시행령 제 5 조 제 5 항 제 2 호와 구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5 호, 동법 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 [별표1 의 2] 7. 가. 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 부과

6.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4. 06]

해당 사례는 2017년에 끝난 처분이나 퀄컴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4월 13일에 공정위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 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기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실행하였다.

① 경쟁 모뎀칩셋 조제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사용권 (이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

②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체결·이행을 강제

③ 칩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특허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하도록 요구

[제재내용]

"공정거래법"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5 조 제 3 항,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

7. 지마켓 및 오진상사(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주)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FCS 쿠폰 삭제를 요구하였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주)와 원활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하여,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하였다.

[제재내용]

이러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 지마켓, 오진상사(주) 및 과징금 (주)오진상사 1,500만원 부과

[1]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8. 신일전자의 거래강제행위 제재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점검하였으며,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속 사원들에게 제품 판매를 강요하였다. 또한,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 또는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하였다.

[제재내용]

해당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의 구매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 및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2.4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 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됨

가. 배타조건부 거래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7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7. 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1.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 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실시기간 (장기인 경우 경쟁에 영향 미칠 수 있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등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가 다음과 같은 합리성이 있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님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 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등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등

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7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7 .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1.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 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등

# 3. 부당한 공동행위

### 3.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 40 조 제 1 항)

부당한 공동행위 (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음의 3 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 둘 이상의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 합의의 존재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 (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협정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증거 (정보교환, 만남의 증거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 경쟁제한성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다 경쟁방지, 경영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 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 (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 (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 (용역 포함)의 생산·거래 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등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3.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 법 제 40 조 제 5 항 )**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은 추정제도를 두어 아래 가. ,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추정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a.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b.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심결례]
2018 년 7월경 ~ 2019 년 12월경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14건의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
[심결요지]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및 에이치엠씨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 참여하 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재내역]
과징금 브이유텍 20,515,868, 디노시스 6,139,949, 해솔피앤씨 15,521,868,
에이치엠씨 3,915,575 (단위 : 원) 2022. 02. 23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성립요건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 + 외형상 일치

1. 정황증거
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ex)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ex)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ex)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ex)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 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문건 (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심결례]
합의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결정, 그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 그에 따른 미납가산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기간 동안 합의에 기한 실행 지속. 2013년 ~ 2018년 동안 앞서 합의 실행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과 관련된 민원처리 방안, 언론대응 방안등을 만들어 소비자와 언론의 지적에 공동으로 대응, 2016년 ~ 2018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히 (이하 "권익위"라 한다) 와 국회, 그리고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미납가산금 연체료 합리화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
[심결요지]
갤럭시아머니트리, 에스케이플래닛, 다날, 케이지모빌리언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미납가산금의 부과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산정을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재내역]
과징금 갤럭시아 1,941, 다날 5,386, 모빌리언스 8,751, SK플래닛 855
(단위 : 백만원) 2022. 02. 23

2. 외형상 일치
①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요소
- 가격 등의 변동를, 변동시점
→ 가격등 경쟁변수의 변동를, 변동폭, 변동시점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가격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 라면 가격등 경쟁변수의 변동를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인정가능
②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를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나. 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성립요건 :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1. 외형상 일치
※ 상기 가. 항의 ② 외형상 일치 요건과 내용 동일

2.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①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인정가능성 높음

②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인정 가능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합의 추정의 목별

→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3.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법 제 40 조 제 2 항)**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 반에 해 당하지 않음 (법 제 40 조 제 2 항)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 연구·기술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부당공동행위 최신 심결례

1. 한국전력공사등 발주 맨홀뚜껑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7. 03]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 한전의 물림형 멘홀뚜껑의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5개사는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과 한전 경쟁입찰의 누적 낙찰물량이 사업자들 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입찰을 담합하였다.

[합의내용]
5개사는 한전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 및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 또는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 제 8 호[1] (입찰담합)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35백만 원 부과
[1]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

2. 서을 2호선·김포도시철도등 철도차량 두차례 담합 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7. 13]
(제 1 공동행위) 2013년 1월 ~ 2016년 11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담합
국내 철도차량 제작 시장을 거의 독점하였던 현대로템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우진산전이 경전철 차량을 제작/납품함에 따라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을 잠재적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관련 입"이 생겼고 현대로템은 우진산전과 경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담합을 제안하였다.
(제 2 공동행위) 2019년 2월 ~ 12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담합
제 1 공동행위 종료 이후,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실제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3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따라서 국내 철도차량 업계 내에 저가수주를 방지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철도차량 제작 능력이 향상된 다원시스를 포함하여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3사 간의 담합이 시작되었다
[합의내용]
(제 1 공동행위) 2개사는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며,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제 2 공동행위)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우너시스 3개사는 2019년 2월 ~ 12월 동안 발주된 5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하였다. 단, 제 2 공동행위는 제 1 공동행위와 달리 3개사가 모두 철도차량 제작자의 지위에서 한 합의이기 때문에 하도급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제재내용]
(제 1 공동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동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 제 8 호[1] (입찰담합) [1] 현 "독점규제 및 공동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
(제 2 공동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동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 제 3 호[1] (물량배분담합) [1] 현 "독점규제 및 공동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원을 부과

3. 7개사 발주 금융카드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보도일시 : 2022. 07. 14]
IC집사와 플레이트사 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모바일 카드등이 등장하면서 실물 카드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코나아이(주)등 6개사는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레이트 공급 능력을 활용하여 IC칩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등을

시도하기 위해 담합을 협의하였다.
[합의내용]
코나아이(주)등 6개 카드 제조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등을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 사항을 신용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함
[제재내용]
구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8 호[1] 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명령 및 140억 7,100만원 과징금 부과 [1] 현 "독점규제 및 공동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

4.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보도일시 : 2022. 08. 11]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 동국제강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등 압연사들이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다.
[합의내용]
현대제철등 11개사는 2012 ~ 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함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동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 제 3 호와 제 8 호[1] 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공정위는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
[1] 현 "독점규제 및 공동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와 제 8 호

5. 투사재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위 [보도일시 : 2022. 09. 22]
추사재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 주원료인 철스크랩 (고철)의 가격상승, 중국산등의 수입 투사재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합의내용]
2017년 국내산 제조 3사의 대표이사들은 유선 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 시장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합의
[제재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4 호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 7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6.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 담합 제재 [보도일시 : 2022. 09. 29]
동일이 베바스토가 실시하는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 참여하기전부터 이미 동일과 유일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상호 협조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루프씰 품목에 대해서도 서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목적으로 동일과 유일 간 담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존 담합 품목 외에 선루프씰 품목에 대해

서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합의내용]
2개사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였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한편,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경우 또는 매출감소, 공장가동률 저하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제재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명령과 총 11억 4,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7.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등 발주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제재
[보도일시 : 2022. 10. 12]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구매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하여 구매하기로 시작하였고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3개사 뿐이었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07. 07 최초로 협정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담합을 시작하였고, 이후 3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담합의 대상을 한국도로공사, SK브로드벤드, 도시철도기관 입찰로 확대하였다.
[합의내용]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금을 배분하였다.
[제재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4 호 (거래지역제한) 및 제 8 호 (입찰담합)에 위반되는 행위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 1천만원 부과

8.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보도일시 : 2022. 10. 13]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 계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하였으며,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합의내용]
알보젠 측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상,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제재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 4,500만원 부과

9. 서울시 마포구청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보도일시 : 2022. 12. 20]
마포구청이 2017년 2월에 최초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대행업체 4개사는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 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
[합의내용]
(주)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주), 평화환경(주), (주)효성환경 4개의 사업자는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권역으로 나누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등을 합의하였다.
[제재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원을 부과

10. 효성중공업(주) 발주 중량물 등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 [보도일시 : 2023. 01. 01]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주)동방등 6개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되었다.
[합의내용]
(주)동방, 세방(주), (주)케이씨티씨, (주)한일, (주)사림중량화물, (주)창일중량등 6개 사업자는 2008년 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제재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 9,400만원을 부과

11.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 제재 [보도일시 : 2023. 01. 04]
입찰 공고에서 공고하는 엑스선관의 자동촬영 기능과 민원인 대기 시스템은 (주)엠베이스가 개발하여 구현 및 운용이 가능하였고 (주)엠베이스는 이 사건 입찰의 공고 규격이 타사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유찰을 방지하고자 (주)굿플과 담합을 하게 되었다
[합의내용]
(주)엠베이스는 이 사건의 입찰공고를 확인한 이후 친분이 있던 (주)굿플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주)굿플은 이를 승낙하여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해당 행위를 실행하였다.
[제재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

12.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 제재 [보도일시 : 2023. 02. 13]

강원실업(주), (주)경포레미콘등 17개사는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강릉시 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담합을 했다.

[합의내용]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 하여 실행하였다.

[제재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8,200만원을 부과

13. 오송역 3개 주차장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4. 23]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하였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합의내용]

3개의 사업자들은 2016년 11월경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요금을 인상시켰다.

[제재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에 위반되는 부당공동행위로 시정명령 과 과징금 2억 7,500만원을 부과

14.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제재 [보도일시: 2024. 04. 05]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하였다.

[합의내용]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전자우편과 카카오톡을 통해 견적서를 들러리사에게 전달하여 입찰가격을 조정하였다. 일부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명시하지 않고 입찰가격만을 합의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함.

[제재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Q & A**

Q.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종업체 간에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가?

A. 동종업체 간에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보다 설비의 신·증설을 억제하여 공급량을 제한할 목적으로 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관련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클수록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게 되어 법 위반 가능성이 커짐

Q. 정부의 행정지도로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한 경우가 법 위반인가?

A.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사업자 간에 행해지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공동행위와는 구별되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됨. 예를 들어 행정관청에서 소집한 가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회의가 끝난 후 관련 사업자들이 일치해서 동일한 선에서 가격을 책정하 게되는 행위 등은 법 위반임
단, 공정거래법 제 58 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는 법 위반이 되지 않음

Q. 반덤핑 수검자료 준비를 위해 관계사들과 거래가격, 거래조건등 기타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공동대응 행위는 관계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 되는가?

A. 반덤핑 심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관계사간에 가격, 수량등 거래조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그 과정에서 관계사를 모니터링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음.
단, 외국의 반덤핑 제소 등의 방지를 위하여 국내 사업자들 간에 상품의 가격, 수량, 거래상대방등 거래 조건에 관하여 공동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덤핑 제소 대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음

Q.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우리 회사의 가격인상과 비슷한 시기와 인상를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럴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가?

A.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의식적 동조행위임. 그러나 의식적 동조행위 자체만으로 위반행위가 되지 않으며 정황증거가 같이 제시되어야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또한 국내 경쟁사업자들과 비슷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면 타 회사들이 우리 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고 사업자간 회합등 정황증거 가 있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3. 하도급법

# 1. 하도급 관련 규제

##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함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 1.2 하도급법의 체계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 적용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나. 하도급거래의 규제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 (21. 12. 09 법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 선급금 지급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의무
(21. 12. 09 법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2. 사업자의 금지사항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 물품 구매대금등의 부당 결제청구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유출행위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 금지

3.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

4.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 서류보존 의무
   - 계약이행보증 (건설) 의무
   -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 신고 시 증거서류 제출

다.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시정명령, 권고등)
   - 공표명령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 (기술유용 행위는 최대 5억원까지 부과 가능)
   - 상습 법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등 요청)

2. 사법적 제재 (공정위의 전속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당경영간섭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 3 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3.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 (3배 손해배상 책임)
   - 부당단가 인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 부당발주 취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1.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가. 하도급의 정의

1. 민법상 하도급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 (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이다. (민법 제 664 조 참조)
   -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그 도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 ( 하수급인 ) 에게 다시 도급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함

2.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 (이하 "납품등"이라 한다) 하고 그 대가 (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 2 조 제 1 항 참조)

나. 법 적용 대상요건

1. 적용대상 사업자 (법 제 2 조 제 2 항 및 제 3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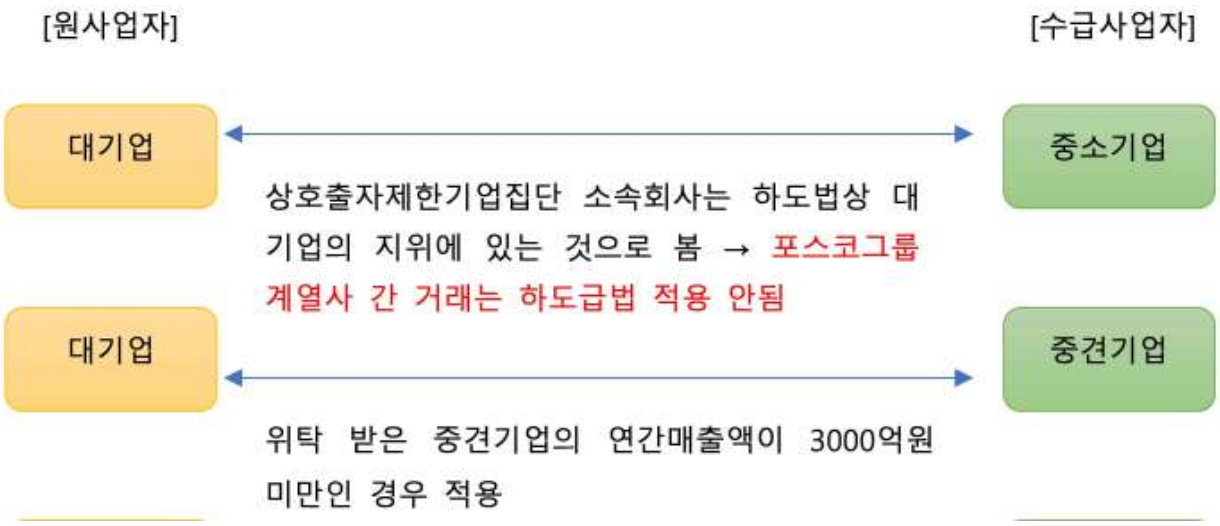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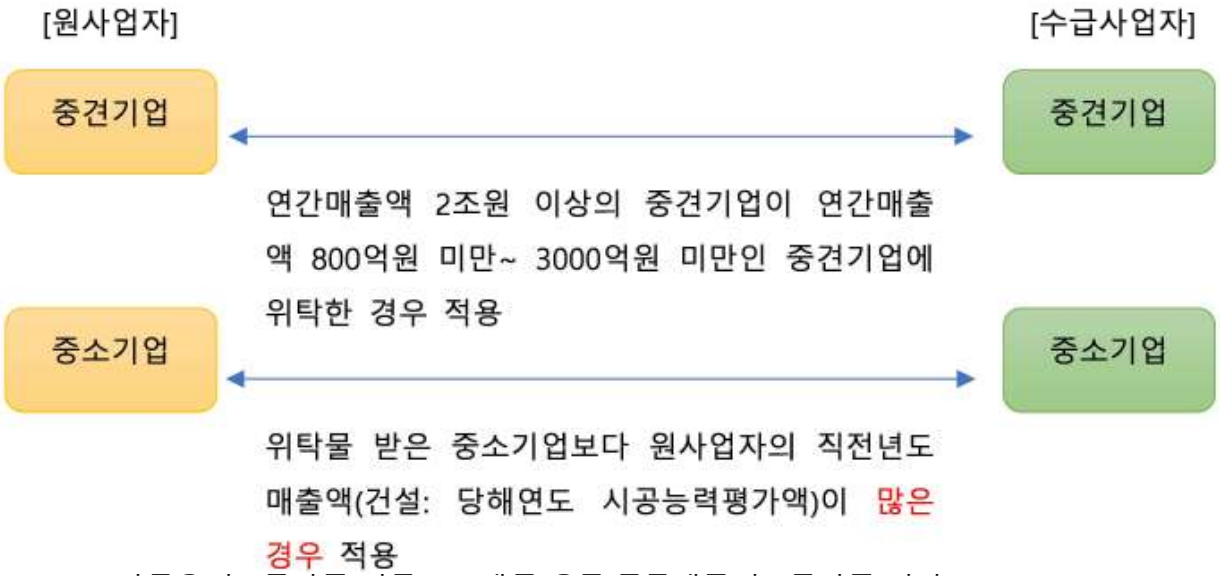


※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이하 "대기업") 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2. 적용제외 대상 중소기업 (하도급법 시행령 제 2 조 제 4 항)
- 연간매출액 (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 위탁유형 |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
|---|---|
| 용역위탁 | 10억원 미만 |
| 제조·수리위탁 | 30억원 미만 |
| 건설위탁 | 45억원 미만 |

다. 적용대상 거래

1. 제조하도급 ("제조위탁" : 하도급법 제 2 조 제 6 항)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OEM 거래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함. 물품의 제조. 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함
→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등 (임)가공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간주

-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등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제작위탁
- 레미콘, 아스콘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품질등을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제조위탁하는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하여 제조위탁
-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특별히 사양서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2. 수리하도급 ("수리위탁" : 하도급법 제 2 조 제 8 항)
- 주문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건설하도급 ("건설위탁" : 하도급법 제 2 조 제 9 항)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4. 용역하도급 ("용역워탁" : 하도급법 제 2 조 제 11 항 )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체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디자인, 상표, 설계도면등)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성과물
   - 역무의 공급위탁
     → 엔지니어 링산업진흥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설계 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등의 위험발생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라. 법 적용대상 기간

1. 관련규정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 (하도급법 제 23 조)

※ 거래종료일
-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 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2.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가.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1. 서면의 발급 (하도급법 제 3 조 제 1 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중요 기재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 3 조)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목적물)의 내용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 (선급금, 기성금, 조정금액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⑥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 (하도급법 제 3 조 제 3 항)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해당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 제 3 조 제 4 항)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제조·수리·건설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처 통보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미발급 하는 경우 (서면 미발급에 해당)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고 이에따라 주문서, 발주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 경우
- 서면 발급을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심결례]
엘에스일렉트릭은 수급사업자에게 고압배전반, 수상태양광 설치대 및 산업용 인버터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를 제 12 조의 3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요지]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 01. 26 부터 2018. 07. 31 까지 스코트라등 3 개 수급사업자에게 고압배전반, 수상태양광 설치대, 산업용 인버터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구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제재내역]
과징금 엘에스일렉트릭 16 (단위 : 백만원) 2022. 02. 23

2. 하도급계약 추정제 (하도급법 제 3 조 제 5 항, 제 6 항)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1] 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1] 일정한 사항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 제외) 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함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을 서면으로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작업중단, 하도급업체의 손해 예방 가능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 추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 가능

3.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 3 조 제 9 항)

■ 보존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① 하도급계약서
② 제조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증명서
③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등이 기록된 서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⑤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등이 기록된 서류
⑦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등을 기록한 서류
⑧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등을 기록한 서류
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서면
⑩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⑪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⑫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 보존 기간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류는 7년간 보존

■ 컴퓨터등 전자매체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 6조 제 1 항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 (검수관계, 반품

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등)를 파기하는 경우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디스켓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 (법 제 3 조의 2) : 의무사항은 아님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설자재, 전기,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기상표 부착제품(PB)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나. 공공분야 발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21. 12. 09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예정)

1.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결과 공개의무 부과 (하도급법 제 3 조의 5)
- 종합심사낙찰제[1] 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도급 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시 유찰사유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함

[1] 종합심사낙찰제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등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등에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2 조 제 4 항)

다. 선급금 지급 의무

1. 선급금 지급이란?
- 발주자가 위탁하면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해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러한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2.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 6 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시 어음할인료 지급

3. 적용기준
-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내역 (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도와 각 항목별 비율을 지정 받아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그 용도와 항목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ex)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콘공사, 조경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부문에 30%, 철 콘공사부문에 20%를 선급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 금액의 30%,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됨

→ 용도를 지정 받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 관련된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ex) 발주자가 용도 지정 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련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 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의 법정지급 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 (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선급금을 공종별, 품목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았는데 하도급내용은 동공종이나 품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
- 선급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라. 내국신용장 (Local L/C) 의 개설의무

### 1. 내국신용장 개설 (법 제 7 조)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 (인수증)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법 제 8 조 제 2 항)

2. 적용기준
-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원사업자 입증책임)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등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등

[침작사유]
- 내국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물품매도확약서가 필요하므로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조위탁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은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없음
-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출 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됨 · 원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법정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원사업자는 원신용장이 개설되는 대로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이유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못했으나 이를 분명히 입증해 준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15일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준 경우

마.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1.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하도급법 제 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적용기준
-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 3의 공인기관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 거대한 건설공사 (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 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음

3. 대량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 (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등) 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경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타당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정한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경우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불량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하기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에 따른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인수시 계약서에 반품 관련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 후에도 반품 가능

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1.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비율등 (하도급법 제 13 조)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3조 제 1 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간주 (법 제 13 조 제 2 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3조 제 3 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됨 (법 제 13 조 제 4 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면 안 됨 (법 제 13 조 제 5 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날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3 조 제 6 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3 조 제 7 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3조 제 8 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 체결제수단 (기 업구매 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등) 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 (법 제 13 조 제 10 항)

2. 적용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해야함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상 충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 대금지급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 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 현금, 수표)

■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됨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 까지로 간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 (법 제 13 조 제 4 항, 제 5 항)의 적용대상

- 1999년 4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판단기준]
①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
②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 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 (재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 받은 수급사업자 (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선급금 지급에서도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도급법 제 13조 제 9 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고시 어음할인율 : 연 7.5% (2015. 10. 23~)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액수 x 할인율 x 지연일수/365일
- 지연이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고시 지연이율 : 연 15.5% (2015. 07. 01~)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x 지연이율 x 지연일수/365일

■ 유의사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목적물의 납품과 동시에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 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 회 납품 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심결례]
젯아이씨는 2016. 6월경 신발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대금을 금형 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OOO와 합의하고 2016. 7. 27.OOO에 신발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다. OOO는 2016. 7. 27 □□□에 신발제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탁하면서 젯아이씨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요구하였으며, □□□도 직접지급에 동의하고 2016. 11. 30경 금형을 납품하였다. 2017. 3. 3 젯아이씨는 □□□으로부터 금형대금 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고, 2017. 9. 11 금형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음에도 심의 일 현재까지 금형대금 24,750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심결요지]
젯아이씨는 발주자로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등과 자신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재내역] 경고 2020. 08. 24

3. 하도급대금 결제조건등 공시의무 ( 2021. 12.0 9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예정)

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공시의무 부과 (하도급법 제 13 조의 3)

- 공시대상기업집 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결제 조건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함
  → 지급수단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므로 유의

사.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1.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법 제 13 조의 2)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 13 조의 2 제 1 항)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를, 잔여대금의 금액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 13 조의 2 제 2 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 계속 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 13 조의 2 의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 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법 제 13조의 2 제 3 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봄 (법 제 13 조의 2 제 4 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법 제 13 조의 2 제 5 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법 제 13 조의 2 제 6 항)
  → 원사업자가 당좌거래 또는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 (법 제 13 조의 2 제 7 항)
- 원사업자가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 (법 제 13 조의 2 제 9 항)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 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법 제 13 조의 2 제 10 항)

2. 적용기준

-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추가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음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 (월수)] x 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 (월수)] x 기성금 지급주기 (월수) x 2

■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 보증으로 현금을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원사업자 자체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 (예. 원사업자 부도 시)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는 그 증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동(同)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아.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1.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법 제 15 조)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5조 제 1 항)
-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 15 조 제 2 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5 조 제 3 항)

2.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함
-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 (지연이율 : 연 15.5%)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 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예시)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 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자.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 설계 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제 16 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 (법 제 16 조제 1 항)
- 제 1 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 16 조 제 2 항)
- 제 1 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 16 조 제 3 항)
- 원사업자가 제 1 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 13 조 제 8 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 13 조 제 6 항, 제 7 항, 제 9 항 및 제 10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 부터 15일"

로 본다. (법 제 16 조 제 4 항)

2. 적용기준

■ 적용요건
- 제조·건설 위탁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했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함

■ 조정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조정금액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연 15.5%)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1.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제 16 조의 2)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 16 조의 2 제 1 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됨 (법 제 16 조의 2 제 2 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 4 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법 제 16 조의 2 제 3 항)
- 조합은 제 3 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 16 조의 2 제 4 항)
- 제 4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법 제 16 조의 2 제 5 항)
- 제 1 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 2 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 1 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 3 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 4 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 3 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봄 (법 제 16 조의 2 제 6 항)
- 제 1 항, 제 3 항 본문 또는 제 5 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 (법 제 16 조의 2 제 7 항)
-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 16 조의 2 제 8 항)
- 제 2 항 본문 및 제 3 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방법, 제 4 항 및 제 5 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 16 조의 2 제 9 항)
- 원사업자는 제 1 항, 제 3 항 본문 또는 제 5 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 16 조의 2 제 10 항)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제 3 항 본문 또는 제 5 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24 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 제 1 항, 제 3 항 본문 또는 제 5 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 1 항, 제 3 항 본문 또는 제 5 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 제 1 항, 제 3 항 본문 또는 제 5 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가능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 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 보다 낮은 경우에도 조정신청 가능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정 신청 가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법 제 16 조에 따른 조정의무가 발생함
- 공사 저가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 조합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함)로 함
  →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 10%
  →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76-121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제 10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최근 3 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를. 다만, 최근 3 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함
  →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
  →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 (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 보고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지연 시 영업활동이 심각히 곤란하게 되는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등

### 2.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4 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 배 배상제 대상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 4 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법 제 4 조 제 1 항)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 (법 제 35 조 제 2 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하도급법 제 4 조 제 2 항)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1]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2]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 공사현장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전력비, 수도광열비등) 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공용보험료등)는 제외
③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적용기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함. 두 요건은 상호보완적으로 부당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낮추어서, 부당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됨
- 주관적 요건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 객관적 요건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자재 (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가절감, 예산절감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수의계약시에는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의 합 미만으로, 경쟁입찰의 경우 업체의 투찰 이후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4 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 배 배상제 대상

1. 감액금지 (하도급법 제 11 조)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법 제 11 조 제 1 항)
-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함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당감액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하도급대금을 감액 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법 제 11 조 제 3 항 및 시행령 제 7 조의 2)
- 공정위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서식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2.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11 조 제 2 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합의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등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등이 계약시점 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원사업자가 환차손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결제통화를 외화 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율변화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심결례]
부영주택은 2016. 03. 09 ~ 2018. 06. 11 기간 중 이 사건 공사들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행금액 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진행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심결요지]
부영주택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수급사업자인 유한회사 OOOO에 "화성향남 B7 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등 11건을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재내역]
과징금 부영주택 131 (단위 : 백만원) 2021. 11. 18

다.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4 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 배 배상제 대상

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법 제 8 조)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됨 (법 제 8조 제 1 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법 제 8 조 제 2 항)
- 수령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 (법 제 8 조 제 3 항)

2.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된 목적물의 제조 및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3.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무리한 납기를 설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차후에 납기지연을 이유로 한 수령거부나 지체상금 공제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류상으로 수정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발주서 등을 즉시 반납하여 책임을 면해야 함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내용이 발주 시 위탁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위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검사기준이 불명확하여 납품 받은 물품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령거부 할 수 없음

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4 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 배 배상제 대상

1.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 10 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함 (법 제 10 조 제 1 항)

2.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10 조 제 2 항)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불합격을 이유로 이를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납품 받은 상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하자등이 있어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한 목적물이 주문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인수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 또는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반품 받아 자기가 당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여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마.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등
- 4 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 배 배상제 대상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제 12 조의 3 제 1 항)
- 원사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법 제 12 조의 3 제 2 항)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법 제 12 조의 3 제 3 항)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 12조의 3 제 4 항)
-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용 행위도 이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금지대상 포함 (2021. 12. 09 법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
- 기술유용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 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2. 적용기준

■ "기술자료" (법 제 2 조 제 15 항)
- 비밀로 관리되는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그 밖에 영업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의미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시공 또는 제품개발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ex.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등)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기재 사항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②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⑤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⑥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표준서식 보급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 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4.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③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④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⑥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⑦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⑧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거래 이전 단계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등 제 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 3 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 거래 단계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 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 (기술사용계약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거래 이후 단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 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 (법 제 35 조 제 2 항)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바.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1.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 5 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2. 적용기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가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매처의 지정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또는 시공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을 위하여 특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사.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법 제 12 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 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됨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 12 조의 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3.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결제청구 가능
- 수시로 기성이 발생되는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등을 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납품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실제로 투입한 물량보다 더 차감하는 경우 (1 회 기성금 지급 시 전액 차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한 것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작업에 사용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전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물품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납품(기성)이 있을 때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물량만큼을 납품대금(기성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한 원재료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또는 손실을 발생시켜 납품해야 할 목적물의 제조가 불가능하여 조기 결제하는 경우

아.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1.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법 제 17 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당초 하도급계약에는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득이 대물변제한 경우

자.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 18 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 ,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경영상의 정보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등의 세부 지급 내역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등에 관한 정보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 (납품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 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등 인사에 간섭하는 경우·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등을 제한하는 경우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 조건 설정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등 하도급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 (회사 또는 자연인)의I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 3 조의 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 상기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심결례]

OOO는 2006년 부터 만도에게 자동차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받아 거래하던 중 2017년 4월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다. 만도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만도가 추천하는

자를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도는 OOO가 □□□에 납품하던 CNC 가공품과 □□□에 납품하던 사상바렐 가공품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고 OOO의 자금집행 계획 및 자금집행 내역을 만도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심결요지]
만도는 수급사업자인 OOO에게 자동차 부품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피심인이 추천하는 자를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하고, 수급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을 제한하는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제재내역]
경고 2021. 02. 17

차.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1.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 19 조)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 가격·품질·공기등에 있어서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기회제한 또는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2.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 20 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3 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 3 조 제 5 항을 우선 적용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카. 부당한 특약의 금지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법 제 3 조의 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2.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3 조의 4 제 2 항)
     →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등의 약정

3.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유형 (부당특약 고시)
   ①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법 제 3 조 제 5 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법 제 13 조의 2 제 9 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법 제 1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등의 소유, 사용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법 제 13 조의 2 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법 제 13 조의 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④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법 제 9 조의 제 2 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법 제 9 조 제 2 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⑤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수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등 (이하 "자재등"이라 한다) 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3 발주자의 의무사항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 14 조)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4조 제 1 항)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 (법 제 14 조 제 2 항)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 14 조 제 3 항)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함 (법 제 14 조 제 4 항)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법 제 14 조 제 5 항)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 14 조 제 6 항)
-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 (법 제 2 조 제 10 항)

2. 적용기준 (법 제 14 조 및 시행령 제 9 조)
-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어야 함 (법 제 14 조 제 1 항 제 2 호 제외)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반드시 3자 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묵시적인,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유효)
-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는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 (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 가능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부담

3.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 지급 의무의 전제이며, 직접 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원사업자의 비협조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직접 지급액이 기성 미확인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Q & A**

Q.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A.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Q. 계약서 서면교부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서면 (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 (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등에 의해 발주 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되는가?

A.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추후 입증을 위하여 수급사업 자로부터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한 방식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Q.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 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목적물 수령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

A. 하도급법상 목적물수령일은 실제 목적물의 점유개시 또는 인도완료시점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납품이 빈번하여 양당사자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Q.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는?

A.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제조위탁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받은 것을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조위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가설비, 단순구매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아래 사항일 경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은?
① 업체명만 바뀐 경우 / ②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

A. 하도급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은 없으나 다만, 질의에서처럼 업체명만 바뀐 경우 권리의무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업체명과 사업자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합병등의 포괄적 승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회사가 소멸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인지에 따라 거래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Q.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 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A.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목적물의 치수, 전류에 견디는 정도, 인장강도등을 양 당사자가 사전에 정하고 목적물 수령 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다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가?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규격품, 표준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는가?

A. 소위 규격품, 표준품으로 넓게 시판되고 있어 시장품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제조의뢰가 실질적으로는 구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격품, 표준품 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사양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그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Q.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A. 전화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 미교부로 됩니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A.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시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단,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불시까지는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EDI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시스템상 단가를 공란으로 해놓고 발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어쩌면 좋은가? 또 실제의 단가는 아니다는 것을 명기한 후에 "0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0원이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발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Q. 가단가(板單價)는 금지되는가?

A.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Q. 지정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A. 지정가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통상 지불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에 충분히 협의하여 쌍방이 납득하는 단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납기전에 납품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A. 약속한 납기전에 납품하면 원사업자에게는 수취할 의무가 없어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수령 거부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경우에는 가수령으로 납품된 물품을 납기까지 보관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지불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면 좋습니다 (가수령 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함)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 상당분을 감액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지불수단을 어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급사업 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면 그 초과분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불수단을 현금으로 해서 발주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주서면에 기재한 하도급대금액에서 할인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하도금대금 감액으로 되므로, 이에 걸맞는 단가설정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

A.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 (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나아가 OO월 납품분부터 신단가를 발주분 부터로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하자등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지불 전(수령 후 60 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가?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불후에 반품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발주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때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할까? 또, 물가상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

A. 납품이 빈번하고 단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수량, 단가등은 발주서로 정함을 명백히 한 다음 이에 따라 발주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단가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양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단가합의서등에 새로운 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Q.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A.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 23 조). 거래가 종료된 날이란 목적물을 납품한 날 (제조, 수리위탁), 용역위탁은 용역이 완료된 날,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 (하도급법시행 령 제 6 조)

■ 하도급 거래 부분 최신 심결례

1. 세은건설(주)의 하도급공사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2. 27]
세은건설(주)는 2019. 03 ~ 2019. 1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합계 688,600천원에 건설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위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위반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2. (주)흥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7. 03]
(주)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 중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2,435,56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저가로 낙찰되었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2,400,0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반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2 항 제 7 호를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및 2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주)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8. 21]
(주)티제이이노베이션은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한 물품의 수령 을 거부하였다.
[위반내용]
① 서면 미발급 행위
(주)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18년 06월 ~ 2020년 04월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SC 중계기 안테나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이 기제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②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주)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 04. 03 수급사업자에게 물건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③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주)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 03 ~ 2020. 04 수급사업자에게 20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제조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전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 하도급법 제 3 조 (서면 미발급행위)
하도급법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하도급법 제 1 항 제 2 호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에 위반

4. 피에이치에이(주) (구 평화정공)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08. 28]
피에이치에이는 2019. 06 희생절차 중인 A 협력사의 자산(도면 포함) 인수를 제안했으나,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2019. 12부터 A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의 개발을 제 3의 업체인 C 협력사와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의 도면을 C 협력사와 이원화 금형을 개발 하는데 사용하는등 4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목적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상세내용]
① 기술자료 요구행위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을 통해 필요 도면으로 파악한 A협력사의 도면 59건 중 미보유 도면을 A 협력사에 요구하여 16건을 2019. 07 수령하고 나머지 도면 6건을 2019. 11 수령하였다.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제 1 항)
② 피에이치에이는 2016. 09 ~ 2021. 02까지 A 협력사를 포함한 5개 협력사에게 설계 도면등 164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면서 법에 규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제 2 항)
③ 서면 미발급 행위
피에이치에이는 2019. 12 C 협력사에게 이원화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C 협력사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20. 08. 17 서면을 발급하였다.
(하도급법 제 3 조 제 1 항)
[제재내용]
시정명령

5. (주)제넨바이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2. 12. 22]
(주)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수급사업자에게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였다.
[위반내용]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 발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 조)
②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 기일 및 납품 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여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제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함
(하도급법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③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

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하였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하였음에도 즉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 13 조)
[제재내용]
시정명령

6. 서면 없이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한 (주)피앤씨랩스 제재 [보도일시 : 2023. 02. 22]
(주)피앤씨랩스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받으면서, 2017년 0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제재내용]
"하도급법 제 12 조의 3"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7. 다인건설(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3. 19]
다인건설(주)는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 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목적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반내용]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제 1 항 및 제 8 항을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8. (주)유니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3. 23]
(주)유니크는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완료된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를 했다.
[상세내용]
(주)유니크는 2019. 02. 27 수급사업자 A 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 사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주)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성립 이전인 2019. 01. 01 ~ 02. 26 기간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하였다.
[제재내용]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 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9. (주)광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4. 04]
(주)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경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 3백 7십만원을 미지급하였다. 또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3백 7십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반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제 1 항 및 제 8 항에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및 남아있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4천 3백 7십만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함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연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7,236천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10. (주)대덕의 블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4. 05]
(주)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홍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하고, 2021년 11월 1일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1월 30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0천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위반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를"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위반
[제재내용]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

11. 현대엠시스템즈(주)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4. 10]
현대엠시스템즈는 A 사와 기존 거래를 중단하고 2015. 06부터 2018. 05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 사의 기술 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특히 A 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 사 기술 자료를 B 사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표본 모형(샘플) 작업, 개발 회의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A 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A 사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상세내용]
① 기술자료 요구행위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사 카메라 개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A 사에 카메라 케이블 도면, 인쇄 회로 기판(PCB) 배치도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제 1 항)
②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
현대엠시스템즈는 수급사업자 A 가 납품한 카메라의 품질관리등을 위해 카메라 승인도등 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제 2 항)
[제재내용]
"하도급법 제 12 조의 3"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12.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4. 20]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는 2018. 04월 말 수급사업자 A 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A 사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8. 06월 ~ 2019. 02월 기간 중 A 사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A 사에 발급하지 않았다.

[위반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13. (주)레즐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5. 11]

(주)레즐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08,290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20,990 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1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1)]

또한 (주)레즐러는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2)]

[위반내용]

[1)]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 1 항 및 제 8 항에 위반

[2)] (부당 특약설정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 4 제 1 항에 위반

[제재내용]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14. 현대오토에버(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보도일시 : 2023. 06. 01]

2018년 1월경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 사에게 통신 프로토콜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현대오토에버는 A 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자동차를 위하여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 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제재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등) 제 1 항에 위반 되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백만원 부과

## 3.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법)

가. 법안 개정 개요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최근 원재료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는 문제로 이번 기회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중소기업이 고통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납품대금 연동제

1. 납품대금 연동제 란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등 (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등)을 적은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위탁기업(의무자)이 연동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기재하여 사전에 발급해야 한다.

2. 납품대금 연동의 개념
- 납품대금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 2 조 제 13 호)
-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 2 조 제 12 호)

3.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 - 수탁·위탁거래
-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등 (이하 "물품등")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 2 조 제 4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 21 조부터 제 23 조까지,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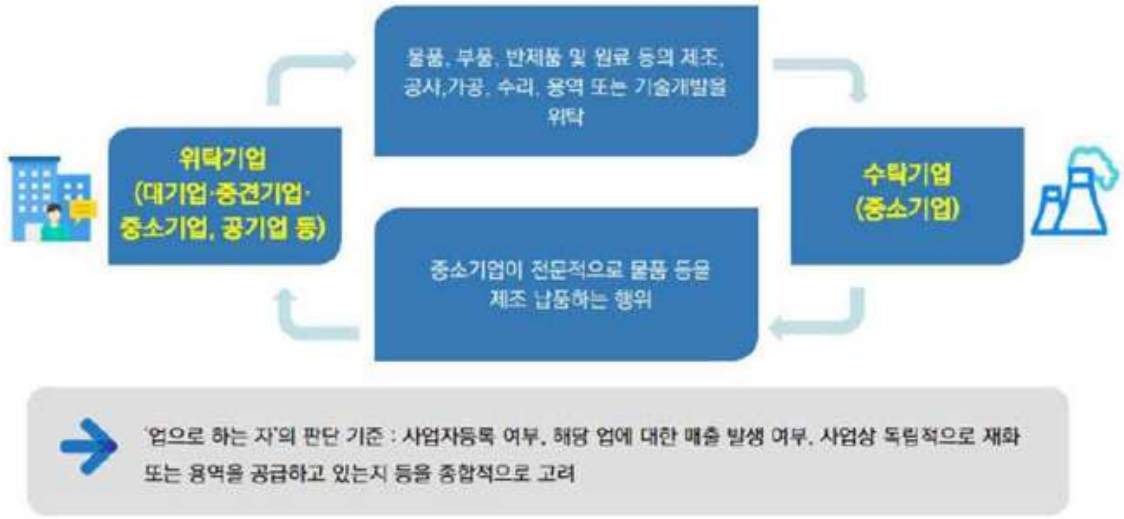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 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의 예시를 포함한다.

| 구분 | 범위 |
|---|---|
| 제조업 |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
| 공사업 |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
| 가공업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등 |
| 수리업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통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
| 판매업 | 도매업 및 소매업 |
| 용역업 |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 "업(業)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용어의 정리

1.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된다.

2. 수탁기업
-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소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3. 주요 원재료
-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한다.
  ① 천연재료: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등
  ② 화합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등

4. 연동 대상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
- 다만, 해당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주요 원재료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

5.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약정 체결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조정 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한다.

6. 원재료 기준 가격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연동 대상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7. 조정요건
   -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

8. 조정주기
   -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9. 조정일
   -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10. 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 특별약정서 제 5 조 제 5 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납품대금 연동 산식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ex) 조정될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2kg) + 5,000원

라. 납품대금 연동 절차

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작성
   - 위탁기업가 수탁기업은 협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 납품대금의 조정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 등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3. "납품단가 변동표"의 작성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 한다.
   - 다만,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사항에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4.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을 연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서류의 비치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와 이와 부속되는 "납품대금 변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수탁·위탁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상생협력법 제 39 조)

마. 납품대금 약정서 작성방법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 사항에 충분히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1. 물품등의 명칭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또는 기술개발 (이하, "제조")을 위탁한 물품 등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
   ② "물품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등을 말한다.
   ③ 품목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한다.
   ④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2. 연동 대상 원재료
   ①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
   ② 다만,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주요 원재료"를 포함해야 한다.
      - 주요원재료 :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④ 이외 "연동 대상 원재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해당 원재료의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재료
      - 계속적 거래 관계 또는 장기간의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
      - 국내외 가격지표가 명확하거나 위탁기업이 직접 원재료 구매가격을 협상하거나 구매하여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한 원재료
      - 주 투입 원재료가 단수이거나 여러 원재료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라도 투입 원재료의 특징 및 원재료별 투입비율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
   ②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 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재료 (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등)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① 연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
   ②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조정요건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으로 기재
      ex) 조정요건을 ±3%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였다면,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6. 조정 주기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

②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년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입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7. 조정일
①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
② 조정 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 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입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8. 조정대금 반영일
①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② 위탁기업은 조정 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③ 연동 대상 원재료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①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
② 다양한 기재 방법이 있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2kg) + 5,000원
-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x 철 중량 (2kg) + 10,000원
-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경우
→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x 철 중량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x 반영비율 (100%) x 동 중량 (10kg)]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동 기준가격 변동분의 100%를 납품단가에 반영

  동 중량 : 10kg

-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 (경영정보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를의 일정 비율 (납품단가에서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

  = 직전에 적용된 납품단가 x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를 x 단가 변동비율 (50%))

10. 기타사항
-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납품단가의 절사 기준등)

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 예시
- 연동 대상 원재료들 두 개 이상으로 정한 사례

| 납품대금 연동표 | | |
|---|---|---|
| 구분 | 기재사항 | |
| 1. 물품등의 명칭 | 알루미늄 합금 (A-001) |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알루미늄 | 동 |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 (전기동고시가) |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 직전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br>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초일 |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br>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 5. 조정요건 | 모든경우 | |
| 6. 조정주기 | 1 개월 | 2 개월 |
| 7. 조정일 | 매월 1일 | 홀수달 1일 |
| 8. 조정대금 반영일 | 매월 1일 | 홀수달 1일 |
| 9. 납품대금 연동산식 |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br>=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x 알루미늄 중량(1ton)) +<br>(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0.1ton)) + 5,000,000원 | |
| 10. 기타사항 |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 (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 (기준시점) 3,000천원/ton 에서 `23년 1월 1일 (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 (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납품단가 : 3,300천원/ton x 1ton + 10,000천원/ton x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 (알루미늄 ,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 (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 (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 (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 (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3,000천원/ton x 1ton + 12,000천원/ton x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 한 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등 하는 경우로 "발주 시"을 조정 주기로 설정한 사려

| 납품대금 연동표 | |
|---|---|
| 구분 | 기재사항 |
| 1. 물품등의 명칭 | 고정식 프로펠러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구리 |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LME Cu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 발주서 발행일<br>비교시점 :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 (월 평균) |
| 5. 조정요건 | ± 5% 이상 변동 시 |
| 6. 조정주기 | 발주 시 |
| 7. 조정일 |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
| 8. 조정대금 반영일 |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
| 9. 납품대금 연동산식 | 최종 납품 대금 =<br>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
| 10. 기타사항 |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br>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 받기로 함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 (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5월 1일 (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 (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x (10,500천원/ton + 500천원/ton (가공단가)) = 11,000천원
→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 `23년 6월 1일)

사.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방법

1.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①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물품등에 관한 단위도 명확히 표기하여 기재
   ex)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원 (단위 : 1개)
   ②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
   ex)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00원 (단위 : 약정한 납품대금 총액)

2.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①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이는

첫 번째 조정일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의미한다.

②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기재한다.

ex)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동), 20,000USD/ton(니켈)

3. 조정대금 반영일

①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납품대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ex)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조정대금 반영일도 매월 1일로 정하였고, 조정일인 '23년 1월 1일에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조정대금 반영일인 '23년 1월 1일을 기재

4.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①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일 기준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

ex) 예컨대 조정일이 '23년 1월 1일이고, 비교시점이 '22년 12월인 경우, '22년 12월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

②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한다.

아.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예시

##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원 (단위 1개)

□ 특별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

|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납품단가[1)] | 위탁기업 확인 | 수탁기업 확인 |
|---|---|---|---|---|
| `23년 2월 1일 | 11,000천원/ ton | 104,000원 | 서명·기명 | 서명·기명 |
| `23년 3월 1일 | 12,000천원/ ton | 108,000원 | 서명·기명 | 서명·기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연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Q & A**

Q. 대급납품 연동제란 무엇인가요?

A.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모든 수탁거래에 연동약정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서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노무비와 경비도 주요 원자료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A. 노무비와 경비는 주요 원재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위탁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데 위법한 행동 아닌가요?

A. 맞습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위반한 위탁기업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위탁기업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변경하였습니다.

A.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위반한 위탁기업은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시 약정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① 물품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④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 조정요건, ⑥ 조정 주기, ⑦ 조정일, ⑧ 조정대금 반영시점 , ⑨ 납품대금 연동 산식, ⑩ 기타사항이 들어갑니다.

Q. 수탁·위탁거래 기본계약서가 있는데 혹시 납품연동 약정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수탁·위탁거래 기본계약서가 있을 시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 4. 구매부분 행동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 1. 광양(주) 구매부분 공정거래 행동 가이드 라인

■ **협력기업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협조 명목등을 사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무리한 거래조건 수용을 강요하거나 제안하지 않도록 합니다.
- 수익성 향상을 위한 부당한 가격인하 (감액), 협력기업 대상 강제적조사등 행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부당특약 (불공정약관) 설정,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요구 행위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협력기업 대상 제도 신규 도입, 변경등의 경우 CP 절차를 준수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제도등 변경 시 CP 주관부서와 상의하여 Risk 저감방안 검토 후 시행합니다.

■ **협력기업 대상 계약서(약관)의 임의변경 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약관련 사항을 미리 정해 놓은 약관, 계약서, 지침, 입찰유의서등 계약내용을 자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 2 공정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 목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점검

# 3 방법

해당 사업부 내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한 자율점검

# 4 점검요령

자율준수담당자가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위반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

# 5 기타

- 본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상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
- 자율준수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한다

# 광양(주) 구매부분 종합 체크리스트

| 불공정거래 행위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체크 |
| 거래거절<br>(공정거래법 제23조) | 공급사에 대하여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쟁사와 공동으로 구입을 거절하지는 않는가? | |
| |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 Brand 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지는 않는가? | |
| | 국산화 개발 후 당초 합의된 품질수준, 수명규정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개발에 미 참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가? | |
|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 회사를 배제하지는 않는가? | |
| 차별적 취급<br>(공정거래법 제23조) |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지는 않는가? | |
| |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직무에 대한 노임을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는가? | |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거나 우대하지는 않는가? | |
| | 물품을 구매 또는 공사를 발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대해 구입 단가, 선급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 | |
| | 사규, 공문, 계약등을 통해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지는 않는가? | |
| |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닌가? | |
| | 거래 의사가 있는 계열회사의 경쟁회사에 대하여 거래 개시를 부당하게 거절하지는 않는가? | |
| 경쟁사업자 배제<br>(공정거래법 제23조)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 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 하게 하지는 않는가? | |
| |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를 평소보다 고가로 매입하지는 않는가? | |
| |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별 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 |

| | | |
|---|---|---|
| | 물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는 않는가? | |
| 거래상 지위남용<br>(공정거래법 제23조) | 원료, 자재 구매 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열회사의 제품 구입을 거래조건으로 하지는 않는가? | |
| | 거래상대방의 기술, 노하우 등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
| 거래상 지위남용<br>(공정거래법 제23조) |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 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 (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 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등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 상대방과 협의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지는 않는가? | |
|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 하지는 않는가? | |
| |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를 처리한 날로부터 새로이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는가? | |
| | 분할발주 공사에서 후속차수 공사가 설계, 착수되었으나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기성고 지급을 지연하지는 않는가? | |
| | 계약서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는가? | |
| | 선행공사 지연 등 사업자 귀책으로 공기, 납기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고, 공사기간 또는 납기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만 추가로 징수하지는 않는가? | |
|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예정가격이나 원가계산상의 오류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지는 않는가? | |
| | 발주자 귀책에 의한 검수지연, 물품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 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는 않는가? | |
| | 선 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을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 |
|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하지는 않는가? | |
|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가? | |
|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 |

| | | |
|---|---|---|
| |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활동을 간섭하지는 않는가? | |
|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법 제23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가? | |
| | 자기가 구입하는 상품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
|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 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
| | 자기가 운송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통해서만 운송하도록 하는 행위인가? | |
| 사업활동 방해 (공정거래법 제23조) | 기술의 부당이용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는가? | |
|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는가? | |

|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하도급계약 체결 관련)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체크 |
| 하도급법 적용확인 (하도급법 제2조) | 거래업체가 중소기업인가? | |
| | 제조, 수리, 용역, 건설위탁 중 하나에 해당되는가? | |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하도급법 제3조) |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일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는가? | |
|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발주량등 거래조건을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수의계약시 도급내역 상의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경쟁입찰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기타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 |
|---|---|---|
| 물품 구매 강제 금지<br>(하도급법 제5조) |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등 정당한 사유 외에 물품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
| |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업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가? | |
| |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는가? | |

| 하도급계약 이행 관련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체크 |
| 선급금 지급<br>(하도급법 제6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는가? | |
|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 |
|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에 대한 지연 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 |
| 내국신용장 개설<br>(하도급법 제7조) |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 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는가? | |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br>(하도급법 제8조)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는가? | |
| |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
|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
|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거부 | |

| | | |
|---|---|---|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하도급법 제8조) | 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는가? | |
| |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 |
| 검사 및 결과 통지 (하도급법 제9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상호협의하에 공정·타당하게 정하는가? | |
| |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가? | |
| |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로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 일이 지나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는 않는가? | |
| 부당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나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지는 않는가? | |
| 부당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는가? | |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지는 않는가? | |
|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지는 않는가? | |
|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지는 않는가? | |
|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지는 않는가? | |
| 경제적이익 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 2)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등 경제적 이익 (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 3)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 기술 지도,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기술 | |

| | | |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br>(하도급법 제12조의 3) |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지는 않는가? | |
| | 기술자료 요구 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등 법정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는가? | |
| |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제 3 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 하지는 않는가? | |
| |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는가? | |
| |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여 수급사업자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지는 않는가? | |
| |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 3 자에게 유출하지는 않는가? | |
| 부당한 경영간섭<br>(하도급법 제18조)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등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 |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 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 배합등을 실사하지는 않는가? | |
|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가? | |

| 하도급계약 이행 관련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체크 |
| 감액 금지<br>(하도급법 제11조)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지는 않는가? | |
|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
|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원 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
|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대금 감액 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등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는가? | |
| 물품 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br>(하도급법 제12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는 않는가? | |
| |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는 않는가? | |
| 하도급대금 지급<br>(하도급법 제13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
|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
|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이나,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시, 어음만기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 |

| | | |
|---|---|---|
| 하도급대금 지급<br>(하도급법 제13조) |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 하는가? | |
| | 하도급대 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으로 지급 시,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가? | |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가? | |
| 건설하도급 대금<br>지급 보증<br>(하도급법 제13조의 2) | 건설위탁 시 법정산식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가? | |
|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가? | |
| |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가? | |
| | 보증의무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 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하는가? | |
|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할 것을 합의하지는 않는가? | |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br>(하도급법 제14조) | 원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 및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 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 |
| | 발주자가 하도급대 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 사업자·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 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하는가? | |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br>(하도급법 제14조) |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 |
| 관세등 환급액 지급<br>(하도급법 제15조) | 수출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 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

| | | |
|---|---|---|
| | 하는가? | |
|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가? | |
|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가? | |
|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변경 계약) 하는가? | |
| |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
| 공급원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의 2) |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히 임하는가?<br>[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예시]<br>-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br>-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경우<br>-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br>-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가? | |

| 악성 법 위반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체크 |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

| | | |
|---|---|---|
| 탈법행위 금지<br>(하도급법 제20조) | 어음할인료·지연이자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
|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
| **불공정약관**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체크 |
|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br>(약관법 제6조) |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기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계약당사자간 소송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거나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면책조항 금지<br>(약관법 제7조) | 사업자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 |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 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br>(약관법 제8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전보배상금, 위약벌금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 |

| | | |
|---|---|---|
| 계약해제·해지<br>(약관법 제9조)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조항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아닌가? | |
| 계약해제·해지<br>(약관법 제9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 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아닌가? | |
| 채무이행<br>(약관법 제10조)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나 책임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고객 권익보호<br>(약관법 제11조)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고객이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의사표시 의제<br>(약관법 제12조)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아닌가? | |
|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대리인 책임 가중<br>(약관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아닌가? | |
| 소송 제기 금지등<br>(약관법 제14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닌가? | |

| | | |
|---|---|---|
| 소송 제기 금지등<br>(약관법 제14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이거나 관할법원을 자기의 소재지로 규정한 조항은 아닌가? | |
|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체크 |
| 성실협의 의무 | 납품대금 연동의 방식 및 기준등 세부 사항은 수탁·위탁거래의 양 | |
| 위탁기업의조정 의무 | 약정체결 당시 예견 할 수 없었던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위험을 수탁기업이 전부 부담하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는가? | |
| | 물품의 제조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이상 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있는가? | |
| | 물품등의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 | |
| 연동 협의서면 보존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면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보관 하는가? | |
| 계약서기재사항 | 위탁·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고 있는가?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체크 |
| 제4조<br>(사업주와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 조건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는가? | |
| | 재해 발생 시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는가? | |
| |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요구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는가? | |
| | 재해 발생 시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받았는가? | |
| | 계약 체결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 |
| | 중대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제기 시 불이익 없이 적절한 대응을 받고 있는가? | |